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최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00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.

발 의 자 : 최혁진 · 박용갑 · 조계원
문진석 · 김동아 · 노종면
김우영 · 윤종오 · 정태호
서미화 · 이주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.

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의 수집·저장·분석·제공을 위하여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그 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용지 제공·전력 사용·기반시설 수용 및 행정 지원의 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음. 그런데 공공데이터 활용의 기회와 그로 인한 산업 집적의 효과가 반드시 그 지역에 환류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우려가 있음.

이에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·기관·단체는 그 센터가 수집·저장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이 감수하여야 하는

부담을 상쇄하고,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2·제26조의3 신설 등).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발전”을 “발전,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·운영되는 빅데이터센터 설치 지역의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”로 한다.

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빅데이터센터 설치 지역의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·운영되는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시·군·구(이하 “센터 설치 지역”이라 한다)에 소재하거나 센터 설치 지역에 입주한 기업·기관·단체가 해당 센터를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·기관·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사업, 실증사업 또는 시험사업의 시행
2.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·기관·단체에 대한 공공데이터 이용료 감면, 바우처 지급, 보조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

3. 센터 설치 지역에 사업장을 두거나 센터 설치 지역에 새롭게 사업장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공공데이터 기반 연구개발, 실증 및 사업화 지원
4. 센터 설치 지역의 대학·연구기관·기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,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 지원
5.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서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·기관·단체에 대한 우대
6. 그 밖에 센터 설치 지역의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보편적 이용 원칙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센터 설치 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6조의3(공공빅데이터센터등의 지역 활용 촉진계획) ① 공공데이터의 유통·활용을 위하여 공공빅데이터센터, 데이터 유통 플랫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·체계를 구축·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운영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은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·기관·단체 및 국내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(이하 “지역 활용 촉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역 활용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·기관·단체에 대한 공공데이터 우선 활용 지원 방안
 2. 분석좌석·분석시간·저장공간·시험환경 등 센터 자원의 일정 부분을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·기관·단체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
 3. 센터 설치 지역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·기관·단체와의 공동 연구·실증·사업화 지원 계획
 4. 국내 기업의 유치 및 센터 설치 지역 정착을 위한 협력사업 계획
 5. 지역 활용 촉진계획의 운영 실적 공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6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우선 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운영기관의 장은 지역 활용 촉진계획 및 그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 활용 촉진계획의 수립·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며, 그 추진실적을 공공데이터 관련 평가 및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 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 장하고,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 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 민경제 <u>발전에</u>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발전, 공공데이터를 기반으 로 구축·운영되는 빅데이터센 터 설치 지역의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에</u> -----.
<u><신 설></u>	제26조의2(빅데이터센터 설치 지 역의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 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·운 영되는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 치된 시·군·구(이하 “센터 설치 지역”이라 한다)에 소재 하거나 센터 설치 지역에 입주 한 기업·기관·단체가 해당 센터를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

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·기관·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사업, 실증사업 또는 시험사업의 시행

2.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·기관·단체에 대한 공공데이터 이용료 감면, 바우처 지급, 보조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

3. 센터 설치 지역에 사업장을 두거나 센터 설치 지역에 새롭게 사업장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공공데이터 기반 연구개발, 실증 및 사업화 지원

4. 센터 설치 지역의 대학·연구기관·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,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 지원

5.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

<신 설>

업에서 센터 설치 지역의 기
업·기관·단체에 대한 우대
6. 그 밖에 센터 설치 지역의
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
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
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
수립·시행하는 경우 공공데이
터의 보편적 이용 원칙을 해치
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센터 설
치 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
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
야 한다.

제26조의3(공공빅데이터센터등의
지역 활용 촉진계획) ① 공공
데이터의 유통·활용을 위하여
공공빅데이터센터, 데이터 유통
플랫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
을 수행하는 시설·체계를 구
축·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장
(이하 이 조에서 “운영기관의
장”이라 한다)은 센터 설치 지
역의 기업·기관·단체 및 국
내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을
촉진하기 위한 계획(이하 “지
역 활용 촉진계획”이라 한다)

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역 활용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·기관·단체에 대한 공공데이터 우선 활용 지원 방안

2. 분석좌석·분석시간·저장공간·시험환경 등 센터 자원의 일정 부분을 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·기관·단체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

3. 센터 설치 지역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·기관·단체와의 공동 연구·실증·사업화 지원 계획

4. 국내 기업의 유치 및 센터 설치 지역 정착을 위한 협력 사업 계획

5. 지역 활용 촉진계획의 운영 실적 공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우선 배정이 실질적

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운영기관의 장은 지역 활용 촉진계획 및 그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 활용 촉진계획의 수립·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며, 그 추진실적을 공공데이터 관련 평가 및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.